

# FTA ANALYSIS

한-중국 FTA활용 및 중국의 신규 통관통상환경

박지문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 한-중국 FTA활용 및 중국의 신규 통관통상환경



**박지문**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2015년 12월 20일 한-중국 FTA가 발효된 이래 양국 모두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비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양국 교역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교역증가로 인해 양국 모두 상대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는 하락세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발효 4년차인 한-중국 FTA의 활용 및 중국의 신규 통관통상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기업의 한-중국 FTA활용 및 변화하는 통관통상환경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들어가며

현재 중국은 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14억 인구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국 수출기업들의 주력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한-중 FTA 발효는 한국 경제성장, 동시에 수출기업들에게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중 FTA 협상에서 한국과 중국 양측은 협정 발효 후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중국정부는

2018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252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관세인하 조치로 인해 수입관세는 평균 9.8%에서 7.5%로 하향조정<sup>1)</sup>되었다. 올해 잠정 세율 인하된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출기업들은 관련 제품을 수출할 시에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의 혜택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2017	2018f	2019f	2020f
GDP(십억 달러)	220.4	240.8	264.9	290.6
GDP 성장률(%)	6.8	6.6	6.5	6.5
1인당 GDP(달러)	2353.7	2545.9	2774.4	3014.5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3.8	4.0	4.0
상품·서비스수출(%)	15.9	13.1	13.9	13.1
상품·서비스수입(%)	15.1	11.3	15.6	14.4
실업률(%)	2.2	2.2	2.2	2.2

주 : f(전망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 2018년 7월부터 MFN 세율 인하된 1,449개 품목(HS코드 단위 기준)은 화장품, 식품, 가전 등 소비품 위주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MFN 세율 인하된 1,585개 품목은 주로 광물자원, 유리, 철강, 기계설비, 섬유 등 중간재임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2018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금융위기 당시 6.4%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높은 부채, 미국과의 무역분쟁 심화를 원인으로 보며, 결과적으로 GDP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제301조) 조치로 글로벌 공급사슬의 혼란 및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기업들의 對중 투자 위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수출액은 22,635억 달러, 수입액은 18,410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4,225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였다. 이 가운데 한-중FTA 발효 전후 한국의 對중국 교역량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한국의 對중국 교역량 및 교역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한-중 FTA 발효 후 對중국 교역량을 살펴보면, 2017년 對중국 수출규모가 약 1,421억 달러 수입 규모가 약 978억 달러, 총 교역규모가 약 2,400억 달러에 달하였다. 2017년까지 對중국 교역량 및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2018년 상반기,

한-중 간 관계 개선에 따라 對중국 수출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중 정상회담의 노력으로 2018년 상반기 對중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1,311억 달러, 무역흑자는 274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다음으로 2017년 한국의 한-중 FTA활용 산업별 수출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중 FTA활용 산업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한-중 FTA	산업분류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수출활용률*	수출미화금액
	전자전기제품	2,468	5,757	42.90%	73,182
	화학공업제품	5,546	9,526	58.20%	28,347
	기계류	2,789	6,018	46.30%	19,297
	철강금속제품	1,640	3,540	46.30%	7,022
	광산물	767	1,285	59.70%	6,86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482	907	53.10%	2,893
	섬유류	558	1,495	37.30%	1,968
	생활용품	259	648	40.00%	1,296
	농림수산물	210	406	51.60%	1,176
	잡제품	10	57	17.70%	72
합계	14,728	29,639	49.70%	142,121	

\* 수출활용률이란 (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임

현재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 상위 5대 품목은 직접회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석유화학 중간원료, 자동차부품으로 그 비중은 점차 상승<sup>2)</sup>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MTI 1단위 산업기준 수출금액은 전자전기제품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기계류·철강 금속제품·광산물이 뒤를 이었다.

또한, 對중국 FTA수출활용률 평균은 49.7%로 화학공업제품, 광산물,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농림수산물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수출활용률을 나타냈다. FTA특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화학공업제품이며, 한편,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철강금속 제품은 특혜대상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활용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 Top 5 비중 2013년 42.6% → 2015년 45.4% → 2017년 7월 48.5%

## II. 한-중국 FTA 활용 단계별로 이해하기

〈한-중 FTA 활용 단계별 순서〉



###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중국)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 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⑤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 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III. 한국의 한-중국 FTA활용 '류'(HS2단위)별 수출현황

〈한-중 FTA활용 상위 30개 '류'의 수출현황〉

2017년 FTA 활용가능금액 기준순위	HS(2)	HS코드 2단위(류) 설명	2017년 FTA 활용 가능금액	2017년 FTA활용률
1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13,423	53.63%
2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101	62.12%
3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687	67.45%
4	29	유기화합물	5,539	78.51%
5	28	무기화합물,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3,906	75.92%
6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100	31.37%
7	73	철강의 제품	2,069	63.25%
8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1,748	50.79%
9	72	철강	1,343	59.04%
10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1,309	62.44%
11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248	52.81%
12	40	고무와 그 제품	1,191	81.27%
13	74	구리와 그 제품	1,102	52.85%
14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1,070	69.04%
15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024	79.63%
16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1,001	48.99%

2017년 FTA 활용가능금액 기준순위	HS(2)	HS코드 2단위(류) 설명	2017년 FTA 활용 가능금액	2017년 FTA활용률
17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900	50.95%
18	70	유리와 유리제품	872	60.08%
19	94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847	66.78%
20	69	도자제품	770	46.10%
21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691	76.43%
22	95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690	65.28%
23	83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607	69.66%
24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552	32.44%
25	55	인조스테이플섬유	526	69.60%
26	42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510	48.85%
27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06	48.64%
28	68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479	67.03%
29	82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443	57.60%
30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류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441	74.36%
총합			61,695	61.04%

FTA 활용률이 평균 수출활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류'

## IV. 한-중국 FTA활용 '류'(HS2단위)별 활용품목 추천 및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한-중 FTA 활용품목 추천은 앞서 살펴본 수출활용 상위 30개 '류' 중 수출활용률이 한-중FTA 평균수출 활용률 61.04%에 미치지 못하는 14개류에 대해,

해당 '류'안에서 FTA 활용 대표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중 FTA활용 '류'별 대표품목 선정방법〉



\* 단, 제27류, 제74류, 제32류, 제37류, 제54류, 제82류의 경우 MFN세율과 특혜세율의 차이가 미비하여 활용품목에서 제외하였고, 제69류는 자제명세서(BOM) 및 제조공정 관련 자료 부족으로 표준적인 제조공정 파악이 어려워서 해설을 생략

### ■ 85류 FTA 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물품정보			산업	전기기기	
			상품명	커넥터용 터미널	
			품명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한다)
	90	기타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7318		29	스크류 · 볼트 · 너트		
7320		20	스프링		
7606		12	알루미늄 판		
	8544	49	전선		

배전반용 보드	주요 원재료	8538	90	배전반용 보드			
		8536	90	커넥터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원재료입고 - 사출성형 - 검사 및 포장			
		①	원재료입고	플라스틱 원재료를 사출기 내로 입고			
		②	사출성형	공급된 원재료를 성형을 통해 제품화 하는 공정			
③	검사 및 포장	완제품 검사 및 포장					
제8538.90호 한-중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 수출액	21억8천만\$	15.2%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7%	0%	7%	0%	
제8538.90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7%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0%가 적용되어, 한중 FTA활용 시 7%의 세율혜택을 누릴 수 있다.				
	CTH or RVC(40)	제8538.90호로 분류되는 커넥터 터미널이란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역할을 하는 물품이다. 제8538.90호 수출시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 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40%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커넥터용터미널 생산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충족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하자.					
		만약 업체가 커넥터용 터미널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알루미늄 판을 사출기에 입고하여 사출성형을 한 후 너트, 전선 등의 원재료와의 제품화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재료인 배전반용 보드의 4단위 세번(8538)과 완제품인 커넥터용 터미널의 4단위 세번(8538)이 동일하여 해당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배전반용 보드가 역내산(KR)이라면, 수출(혹은 생산)업체는 원재료의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원재료가 역외산이라면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인 CTH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재료의 가격을 통해 최소허용기준 충족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혹시 해당 원재료가 최소 허용범위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역내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90류 FTA 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산업	광학기기					
	상품명	광학렌즈 부품 : 카메라 렌즈					
	품명	9002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11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품명				
	9001	90	렌즈				
	7616	99	알루미늄 부품 (스크류 · 볼트 · 너트 등)				
	7014	00	유리로 만든 렌즈 부품				
	주요 제조공정도		원재료 입고 - 사출성형 - 조립 - 검사 및 출하				
	①	원재료입고	원재료 입고 및 건조시키는 공정				
	②	사출성형	사출기를 통해 렌즈를 성형하는 공정				
주요 제조공정	③	조립	렌즈 및 틀을 조립하여 본딩하는 공정				
	④	검사 및 출하	완제품을 검품하고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				
	제9002.11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 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2억3,479만\$	13.71%	15%	12%	15%	11%		
제9002.11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15%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가 낮아진 11%가 적용되고 있다.				
	CTH		제9002.11호로 분류되는 광학렌즈 부품 중 카메라렌즈는, 렌즈와 알루미늄 및 유리부품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본 물품을 수출시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 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해 볼 때, 파악된 주요 원재료에는 완제품과 동일한 4단위 세번을 가지는 물품이 없으므로, 만약 본 상품이 한국 내에서 사출성형, 조립 등의 주요 제조공정을 수행할 경우라면 무리 없이 주어진 원산지결정기준 (CTH)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72류 FTA 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품목 코드 설명			산업	철강			
			상품명	스테인리스 냉연코일			
			품명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 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품명			
		7219	13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			
	7219	35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자재입고- 원재료 절단- 압연 및 열처리- 라벨링 및 출하			
		①	자재입고	원재료를 입고하여 원재료 사양 및 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②	원재료절단	허용 기준에 맞춰 원재료 절단하는 공정			
③		압연 및 열처리	압연 및 고주파로 열처리하는 공정				
④		라벨링 및 출하	라벨링 작업 및 규격에 맞는 박스에 포장하여 검사				
제7220.20호 한-중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 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8,3,32만\$	4,7%	10%	7%	10%	6%	
제7220.20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10%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가 낮아진 6%가 적용되고 있다.  제7220.20호로 분류되는 스테인리스 냉연코일은 원재료인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을 주요 제조공정인 절단, 압연 및 열처리를 통해 생산한 제품이다. 본 물품을 수출시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8호 또는 제7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충족해야 한다.				
	CTH (ex. 7218 or 7219)		완제품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  제시된 주요 원재료 및 제조공정 그리고 완제품의 세번(제7220. 20호)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호에 대한 한-중 FTA에서 제시된 세번변경기준 단서조항에서 제7219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이 역내산이어야 하며, 수출자가 해당 원재료를 직접생산하지 않을 경우 원재료 생산· 제공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령 받아 제출해야 한다.				

■ 76류 FTA 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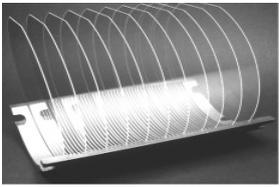
	산업	알루미늄				
	상품명	롤러선반				
	품명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99	기타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품명		
		7604	29	알루미늄		
		3926	90	플라스틱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사출 - 조립 - 검품 및 포장		
		①	사출공정	플라스틱 사출공정 및 필요 사이즈로 플라스틱 받침대 절단		
		②	조립공정	플라스틱 롤러와 받침대, 알루미늄 연결대 등을 조립		
③		검품 및 포장	검품 및 박스 포장			
제7616.99호 한-중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1억 8,796만\$	24%	15%	10.5%	15%	9%
제7616.99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15%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5%가 낮아진 9%가 적용되고 있다.  제7616.99호로 분류되는 알루미늄 롤러선반은 알루미늄 선반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롤러 및 받침대를 설치한 것으로, 상품을 앞에서 꺼내면 뒷 상품이 자동으로 앞으로 밀려 내려오게 하는 기능이 있다.  우선 롤러선반의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  만약 업체가 롤러선반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알루미늄 선반(제7604.2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롤러와 받침대(제3926.90호)를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재료들과 완제품은 모두 서로 다른 4단위 세번에 포함되어 있어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만을 통해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CTH					

■ 62류 FTA 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표준대리제		산업		섬유				
		상품명		의류 고정용 밴드				
		품명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 부속품의 부분품 (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0	부분품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402	62	폴리에스테르				
		5401	10	합성필라멘트				
	주요 제조과정	5402	44	탄성사				
		주요 제조공정도		나름 - 통경 - 도안 - 시직 - 생산 및 염색 - 가공·롤링				
		①	나름	원사를 빔에 감는 작업				
②		통경	실(원사)를 하나씩 기계에 끼우는 작업					
③		도안	글자 및 모양 등을 CAD로 도안하는 과정					
④		시직	처음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					
⑤		생산 및 염색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원하는 컬러로 염색하는 과정					
⑥	가공 및 롤링	제품의 구김을 펴주는 과정으로 제품 완성 및 롤링작업						
제6217.90호 한-중 FTA활용현황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2,569만\$	16.8%	14%	11.2%	14%	10.2%		
제6217.90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14%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가 낮아진 10.2%가 적용되고 있다.					
	CC or RVC(40)		본물품은 주로 아웃도어 하의에 해당하는 바지에 부착하는 고정용 밴드로 탄성이 있는 직물제 밴드이다. 주로 등에서 교차하여 어깨로 이어져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p>제6217.90호 한-중 FTA 활용방안</p>	<p>CC or RVC(40)</p>	<p>제6217.90호 수출시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혹은 40%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우선, 의류 고정용밴드를 생산하는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p> <p>만약 업체가 의류 고정용밴드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폴리에스테르 및 탄성사를 입고·재직하여 직접 가공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재료인 폴리에스테르 및 탄성사 2단위 세번(제54류))과 완제품인 고정용 밴드의 2단위 세번(제62류)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p>제6217.90호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기준(둘 중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원산지충족이 용이한 세번변경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며,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고려하여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별한다.</p> <p>※ 주의 : 해당물품은 한-중 FTA 이외에도 APTA적용 대상이면서 APTA의 세율이 2018년 9.1%로 한-중 FTA 협정세율 10.2%보다 더 낮다. 따라서 본 물품은 현재에는 세율적인 측면에서 한-중 FTA보다는 AP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APTA의 경우 한-중 FTA와 달리 해당물품에 다음*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p> <p>* APTA의 원산지결정기준 :</p> $\frac{\text{원산지 미상} + \text{비원산지 재료의 가격}}{\text{FOB 가격}} \times 100 \leq 55$ <p>또한 한-중 FTA양허스케줄에 따라 본 물품은 매년 1%의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2019년은 9.2%, 2020년은 8.2%의 한-중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품목의 APTA 세율이 추가로 인하되지 않는 한 2020년에는 한-중 FTA세율이 APTA 세율보다 낮게 된다.</p>
---------------------------------------	----------------------	---

■ 62류 FTA 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원산지결정기준		산업	유리제의 기타제품			
		상품명	석영유리 (Quartz Glass)			
		품명	7020		유리제의 기타 제품	
			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7006	00	QUARTZ DISK		
				또는		
		7002	10	QUARTZ DISK		
			20	QUARTZ ROAD		
				또는		
주요 제조과정	7002	31	QUARTZ BLOCK			
	주요 제조공정도		원자재입고 - 슬라이싱 - 연삭가공 - 클리닝 - 검사 및 출하			
	①	원자재입고	원재료 입고			
	②	슬라이싱	절단공정			
	③	연삭가공	표면을 갈아 연삭하는 공정			
	④	클리닝	세척 공정			
	⑤	검사 및 출하	불량품 검수 및 완제품 포장 후 출하			
제7020.00호 한-중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3,205만\$	9.4%	15%	10.5%	15%	9%
제7020.00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15%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5%가 낮아진 9%가 적용되고 있다.			
	CTH		제7020.00호 석영유리는 순수한 규산광물인 석영(Quartz)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상의 웨이퍼 (wafer)를 운반하는 기구이다.  제7020.00호 수출시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7020.00호 한-중 FTA 활용방안	CTH	그림, 석영유리 생산을 위한 제조공정과 주요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자.  만약, 업체가 석영유리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인 Quartz Disk (제7006.00호) 및 Quartz Block(제7002.10호/ 제7002.31호)등을 슬라이싱 및 연삭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 할경우, 원재료들과 완제품인 석영유리(Quartz Glass) 와의 4단위 세 번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
------------------------------	-----	--

■ 42류 FTA 활용가능 대표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품명 핸드백		산업	신변잡화		
		상품명	핸드백		
		품명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포지션레더·플라스틱의 슈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백·운동용 구백·병케이스·신변장식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2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	
주요 원재료	상품 코드		세부 품명		
	5903	20	가죽		
		90			
	9607	19	슬라이더		
20					

원단제어바탕	주요 제조공정	주요 제조공정도					
		①	원단 성형	원단 성형 공정			
		②	원재료 재단	성형한 원단 및 원재료를 크기에 맞추는 재단 공정			
		③	배열	봉제를 위한 재단된 원재료를 배열 공정			
		④	봉제	슬라이더·지퍼와 원재료를 봉제하여 완제품 완성 공정			
		⑤	검품 및 포장	완제품에 본드 처리 등 검품 후 포장되어 출고			
제4202.22호 한-중 FTA활용현황 (2017년 기준)		대상수출액	활용률	2017년		2018년	
				(중국 세율기준)			
				MFN	특혜세율	MFN	특혜세율
		5,017만\$	36.57%	10%	7%	10% (7월이전) 6%(7월이후)	6%
제4202.22호 한-중 FTA활용방안		원산지결정기준		<p>해당물품에 대해 중국은 2017, 2018년 7월 이전 10%의 MFN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이후에는 6%의 MFN 세율을 부과중이다. 특혜세율은 2018년 현재 2017년과 비교하여 1%가 낮아진 6%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7월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는 일시적으로 해당물품은 FTA특혜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는 한-중FTA 양허스케줄에 따라 특혜세율이 다시 5%로 인하될 예정이어서 MFN세율이 추가적으로 인하되지 않는 한 본물품은 다시 FTA특혜대상이 된다.</p> <p>제4202.22호 수출시 한-중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우선, 핸드백을 만드는 제조공정과 주요 원재료를 바탕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하자.</p> <p>제4202호에 분류되는 핸드백은 제5903호에 분류되는 가죽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9607호에 분류되는 슬라이더 등을 사용 하여 「원재료 재단 - 배열 - 봉제 - 검품 및·포장」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p> <p>만약 업체가 핸드백을 생산하기 위한 가죽(제5903호)을 입고하여 직접 가죽으로 핸드백을 생산하는 공정을 거쳤을 경우, 원재료인 가죽(제5903호)과 완제품인 핸드백인 4단위 세번(제4202호)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p>또한 기타 원재료들과 완제품의 품목번호도 4단위 세번이 모두 다른 위와 같은 경우 원재료의 역내산·역외산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다.</p>			
		CTH					

## V. 중국의 통관환경 일반사항

### 주요 통관조직 및 절차

#### ■ 중국해관

- 중국의 관세행정 중앙조직
  - 중국해관총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중국의 통관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기관
  - 해관의 주요기능은 국경을 출입하는 운송수단·화물·여행자휴대품·우편물품과 기타 물품의 감독 및 관리,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단속, 해관 통계 작성, 항만 관리, 보세직업 관리, 지적재산관의 관세집행 및 국제세관 협력 등임
- 2018년 8월부터 한-중국 FTA 관련 중국측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이 질검총국(AQSIQ)에서 중국해관총서(GACC)로 변경
  - ❖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은 중국해관총서(GACC),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조직체계
  - 중국해관은 19개 부서, 6개 북경직속기관, 4개 사회단체, 3개 외국주재기관으로 구성
  - 전국해관은 총 42개 직속해관이 있으며, 742개 예속해관 및 출장소로 구성

#### 〈분서 및 주요 직속해관 현황 및 소관업무〉



##### 광동분서

- 광동분서는 해관총서의 파출기관, 직속해관을 지도
- 종합관리, 협조업무, 조사연구, 회계감사 감독 등의 업무 담당
- 분서 내 14개 부서, 간부 및 직원은 약 190여명



##### 북경해관

- 북경해관은 해관총서직속의 정국급 해관, 북경해관의 업무관할범위는 북경시
- 주요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기타법률, 법규에 근거한 북경지역 입출경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물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 관세와 기타 세비 징수, 밀수조사, 해관통계작성 담당
- 관할구역하에 4개 직속해관 설립(수도공항해관, 중관촌해관, 북경경제기술개발구 해관, 천축해관), 9개 파출기구 및 21개 내부설립 기구
- 북경해관의 간부 및 직원은 약 1,800여명이며, 그 중 밀수경찰은 약 240여명



**상해해관**

- 상해해관은 국가가 상해항에 설립한 입출경 감독관리기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에 예속
- 주요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및 기타법률, 법규에 근거한 북경지역 입출경 운송수단, 화물, 여행자물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 관세와 기타 세비 징수, 밀수조사, 해관 통계작성 담당
- 52개 기구가 설립, 이 중 판공실, 법규처, 관세처 등 내부 업무부서는 18개, 상해푸둥 해관, 상해푸둥국제공항해관 등 17개 해관이 예속

**■ 주요 국가기관**

- 2018년 3월, 중국의 인증·안전 관련 중앙 행정기관 개편
  - 기존의 국가식품식약감독관리총국(CFDA), 국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SAIC)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S)으로 통합됨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출입국 검사검역 관리직책과 조직은 중국해관총서(GACC)로 귀속됨
  - 의약품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식품식약 감독관리총국(CFDA)을 대체할 국가약품감독 관리국(NMPA)을 설치하고, 총괄 관리는 SAMS가 담당함

**■ 통관절차**

- 2017년 7월, 중국해관의 통관과정 변화
  - (통관과정 변화) 통관전 '자진세금납부', 통관후 '수입신고 서류심사' 진행
  - (납세과정 변화)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자진납세하고, 통관후에 수입신고 서류심사 진행
- 기업은 사전에 통관후 관세심사 감사 관련 수입신고 서류검사 준비
  - 기업은 무역 관련 자료(계약서·영수증·운송증빙 서류·보험증빙서류·지급증빙서류·회계장부·업무 문서 등)의 관리·보관에 유의

〈기존 수입통관 과정〉



〈2017년 7월 이후 수입통관 과정〉



기업의 1회 자진신고 납세	3개 위험예방센터	3개 조세징수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자진신고, 자진납세, 세금계산서를 직접 출력</li> <li>- 기업은 세관 EDI센터에 입력시 세관 세금계산 방식대로 예상 세금 계산 → 시스템의 세금결과 확인 → 통관증과 함께 세관 제출</li> <li>- 기업은 세관의 회신접수 후 세금 지급 → 서신 세금고지서가 필요하면 현장세관에서 신청 및 출력 → 출력된 세금 고지서상 '자진납세' 글귀는 납세사실 증명이며 세관결정 확인은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위험예방센터는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에 위치</li> <li>- 위험예방센터는 수입물품의 금지규정 및 저작권 위반여부, 브랜드명, 규격, 수량 허위신고, 안전사항 등을 분석해 조사를 지시</li> <li>- 현장 검사원이 물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조세징수관리센터는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및 톈진 지역에 위치</li> <li>- 조세징수관리센터는 통관 완료 후 무작위로 세수징수요소 심사 대상 선별</li> <li>- 기업의 수입신고 서류심사, 과세가격평가, 원산지 확인 등 검증처리 진행</li> <li>- 특수 정황시 세관은 화물통관 완료 전 세수징수요소를 심사</li> <li>- 기업이 자진으로 세관 감독 규정을 어긴 행위를 서면보고시 처벌수준 완화 가능</li> </ul>

## VI. 중국의 통관환경 최근이슈

### ■ 중국측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 변경

#### ● 중국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C/O) 발급기관 변경

- 2018년 4월 중국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의 출입국 검사 및 검역 업무가 해관총서로 이관됨
- 중국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중국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에서 해관총서

- (GACC)로 변경되며, 2018년 8월부터 한-중국 FTA 및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APT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는 해관총서 산하 전국 42개 직속 해관에서 수행됨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 계속 수행

변경 전	변경 후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중국해관총서(GACC)/전국지역해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이관 업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이후 착오 발급사례 유의
- 잘못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각 지역 중국 해관에서 정정발급이 가능

-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 관세를 적용해야함

### ■ 통관일체화 전산시스템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 수입관세율 전산조회 가능

- 중국해관, 통관일체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인터넷+해관’ 운영
- 기업이 로그인하면 총 60항목의 해관업무를 전산으로 처리 가능한 서비스
- 해당 시스템은 업무를 크게 총 9종(운송수단, 화물 통관, 물류통관, 세금업무, 가공무역 및 보세물류 업무, 기업관리, 행정심사비준, 저작권법, 기타)으로 분류

-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율 전산조회 가능
- 중국해관은 수출입자 편의를 위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과 내국세율(소비세, 증치세)의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

①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 홈페이지 접속 및 세율조회(税率查询)클릭  
 (http://online.customs.gov.cn/static/pages/home.html)



② HS코드(税号) 또는 상품명(商品名称) 입력

进出口商品税率查询

税号  商品名称

税号	商品名称	进口最惠国税率	进口普通税率	进口暂定税率	操作
----	------	---------	--------	--------	----

③ 세율 더 보기(更多税率) 클릭

进出口商品税率查询

税号  商品名称

税号	商品名称	进口最惠国税率	进口普通税率	进口暂定税率	操作
3922100000	塑料浴缸,淋浴盘,洗涤槽及盥洗盆	6.5%	80%		<input type="button" value="更多税率"/>
3922200000	塑料马桶座圈及盖	6.5%	80%		<input type="button" value="更多税率"/>
3922900000	塑料便盆,抽水箱等类似卫生洁具	6.5%	80%		<input type="button" value="更多税率"/>

首页 上一页 1 下一页 末页 跳转到  跳转

④ 협정세율(协定税率)에서 중한자유무역협정(中国韩国自贸协定) 세율 조회

更多税率

- 进口最惠国税率、普通税率、暂定税率
- 进口消费税率、增值税税率
- 进口反倾销税率
- 进口反补贴税率
- 进口废弃电器电子基金、保障措施关税税率
- 进口协定税率

税号	商品名称	进口最惠国税率	进口普通税率	进口暂定税率
3922200000	塑料马桶座圈及盖	6.5%	80%	

协定名称	进口协定税率
中国韩国自贸协定	6%
中国-瑞士自由贸易协定	0%
中国-澳大利亚自贸协定	2%

## ■ 사전판정제도 시행

- 2018년 2월, 중국해관 사전판정제도 시행<sup>3)</sup>
  - 사전판정제도는 화물 수출입 전에 중국해관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수출입 관련 해관업무와 관련해 사전결정을 내리는 제도
  - 동일 화물을 반복 수출입하는 경우 사전판정제도를 활용하면 3년간 동일한 기준으로 수출입이 가능해 편리함
  - 사전판정제도는 글로벌 기준을 따르며, 기존의 3종 사전심사를 통합

(전) 3종 사전심사(품목분류·원산지·가격 사전심사제도), 행정사전판정제도 →  
(후) 사전판정제도, 행정사전판정제도

❖ 세계관세기구(WCO)의 '무역원활화협정'에 규정된 사전판정 제도는 국제세관에서 통용되는 무역원활화 조치

### ● 사전판정제도와 행정사전판정제도

- 리스트관리센터와 세금징수관리센터를 통해 위험관리와 세금징수 등 중요한 업무에 대해 집중적이고 통일화되며 스마트한 관리체계를 구축

구분	공통점	차이점
사전판정제도	- 해관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화물의 실제 수출입 전에 시행될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해관 업무를 결정 내림	- (판정기관) 직속 해관에서 판정 - (법률효력) 사전판정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가짐
행정사전판정제도	- 해당 결정은 전국 해관 에서 공통 적용	- (판정기관) 해관총서(GACC) - (법률효력) 신청인 외에 대외 무역업자 모두에게 구속력 가짐. 해관의 추상적 행정행위로 해관 규정과 동일한 효력

### ● 사전판정제도 신청

구분	내용	기타 유의점
신청범위	- 수출입 화물의 품목분류 - 원산지 및 원산지격 - 세후가격 관련 요소 및 가격산정 방법 (수출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해관총서에 규정된 기타 해관 업무	- 수출입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업무는 사전판정제도 활용 불가

3) 중화인민공화국해관사전판정관리집정방법

구분	내용	기타 유의점
신청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및 수출 계약서, 의향서 등을 포함한 무역 거래 자료</li> <li>- 제품 명세서(제품의 형태, 사양, 기능, 작동 원리 및 상태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li> <li>- 화학 제품인 경우 분자식, CAS번호, 구조식 또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li> <li>- 제품 바코드(GTIN)가 있으면 함께 제출</li> <li>- 기타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곧 시행될 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li> <li>- 제출 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신청자는 중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li> </ul>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관에 등록된 실제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무역업자</li> <li>- 즉, 해관에 등록된 수입화물 수취인 혹은 수출 화물 발송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기업이 사전판정제도 활용이 필요할 경우 중국내 대리기관을 통해 해관에 사전 판정 신청 가능</li> </ul>
신청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3개월 전 해관에 신청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경우 수출입 3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li> </ul>

● 사전판정제도의 적용

구분	내용	기타 유의점
판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전자항구 해관사무연계시스템 또는 인터넷+해관 일체화 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직속 해관에 사전판정 신청</li> <li>- 직속해관의 결정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해관에서 모두 적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속해관의 결정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해관에서 모두 적용 가능</li> </ul>
접수여부 심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정기관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일 부터 10일내 접수여부를 심의결정 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의 신청자료가 부적합하면 자료 보완 관련 통지가 있음</li> </ul>
접수완료 후 판정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 검측 및 전문가 논증 등에 소요된 시간은 판정결정 시한에 미포함</li> </ul>
판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판정결정의 기한은 3년간 유효</li> <li>- 판정결과는 신청인 및 해관에 모두 구속력을 갖음</li> <li>- 판정결과는 신청인이 사전판정에 신청한 수출입 화물 및 유효기간내 수출입하는 기록과 동일한 화물에 대해 효력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효기간내 사전판정에 의거하는 법률, 행정법규, 해관규약 및 해관 총서 공고에 변화가 생기면 이에 근거해 효력이 발생한 판정결과도 효력 상실</li> <li>- 판정결과는 이미 수출입이 진행된 화물에 대해 소급력 없음</li> </ul>

● 우리 수출기업이 유의할 점

구분	기타 유의점
신청기한 고려	- 반드시 화물 수출입 3개월 전에 해관에 신청서 제출 - 특수한 경우 수출입 3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
유효기간 고려	- 판정결과는 3년간 사용이 가능 - 판정결과는 유효기간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규정
사전판정결과 발효전 수출입한 물품	- 사전판정 결과는 발효 전 이미 수출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음 - 해관의 사전판정 결과와 이전에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관의 사찰 혹은 가격심사 등을 받을 위험이 있음

■ 중국해관, 24시간전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 2018년 6월, 중국해관 선적 24시간전 사전신고제도 시행<sup>4)</sup>
-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제외)로의 수입, 중국 본토에서의 수출, 환적(T/S)건은, CCAM 규정에

맞는 적하목록 신고가 이뤄져야함

- ❖ 필수정보가 누락될 경우, 중국해관은 적하목록 신고를 거절 가능함
- ❖ 중국해관의 승인 후 수출지에서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있음
- ❖ 보고된 내용과 실제 선적된 화물이 다를 경우 반송 처리 가능함

●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CCAM)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시행구간	중국 수출/수입 및 중국 환적(T/S) 후 타국가 수출화물까지 모두 해당
시행시기	2018년 6월 1일부터 (선적일 기준)
시행내용	- 본선 선적 24시간 전에 의무적으로 모든 화물의 세부정보를 수출지에서 중국해관에 전송 완료(EDI 전자문서교환) - 직교역화물은 수출지, 환적화물은 환적항에서 EDI 전자문서 전송 - 중국해관의 승인이 떨어진 뒤 수출지에서 화물을 배에 실을 수 있음 - 보고된 내용과 실제 선적된 화물이 다를 경우 반송 처리
필수항목	중국해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적하목록 항목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필수정보가 적하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1) 적하목록상 품명은 B/L상의 품명과 일치해야 하며, 품명은 광의어, 약자가 아닌 상세하고 정확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함 2) 적재항 및 국가코드 3) 송하인, 수하인 그리고 수하인이 To order인 경우 화물도착 통지처 의 이름과 연락처, 연락처 유형 및 기업코드와 기업코드 유형 ❖ 기업코드 및 기업코드 유형의 경우 한국은 VAT no., 중국은 USCI, OC를 의미

4) 2017 세관총서 공고 56호

구분	내용
기타사항	- 화주가 개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대신 신분증번호나 여권번호를 대신 제출 -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물은 도착지 담당자와 긴급연락처를 추가로 밝혀야함
패널티	위반시 최대 RMB10,000(USD15,384)까지 패널티 부과

### ■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시행 (A.T.A 까르네)

- 2018년 2월, 중국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시행<sup>5)</sup>
  -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에 따라 중국에 특정 목적을 갖고 규정된 기간 내에 일시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 일시 수출된 물품의 재수입이 가능해짐
  - 동 법은 물품의 임시수입 및 재수출에 사용되는 국제표준 세관문서인 A.T.A 까르네(수입·수출 신고양식, 재수입증명서 등)의 관리 내용을 포함

### ●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장 제3조	<p>일시 수출입화물 포함 물품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박람회 및 무역 행사에 전시 또는 사용되는 화물</li> <li>② 문화, 체육 교류 활동에 사용되는 공연 및 경기용품</li> <li>③ 신문보도, 영화 촬영 및 편집, 방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설비 용품</li> <li>④ 과학연구, 교육,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 용품</li> <li>⑤ ①~④조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쓰이는 교통수단 및 특수차량</li> <li>⑥ 샘플</li> <li>⑦ 자선활동에 사용된 기구, 설비 용품</li> <li>⑧ 설치, 사전 검사, 측정,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 및 공구</li> <li>⑨ 포장 화물의 포장 재료</li> <li>⑩ 관광 목적의 자가용 및 용품</li> <li>⑪ 공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기 및 용품</li> <li>⑫ 사전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장비, 차량</li> <li>⑬ 그 외 중국해관에서 규정한 기타 일시 수출입화물</li> </ol>
제2장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출입된 물건은 화물이 반출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출국으로 복귀되어야 하며, 특수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경우 관련 중국해관에서 연장 수속을 진행해야함</li> <li>- 연장은 최대 3회(1회에 6개월 미만) 가능</li> <li>- 중국 국가급 연구 및 프로젝트에 사용될 목적으로 일시 수출입된 물품, 전시회에 24개월 이상 전시하는 전시품은 중국해관의 허가에 따라 3회 이상 연장 가능</li> </ul>

5)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일시수출입화물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暂时进出境货物管理办法)

구분	내용
제2장 제13조	- 일시 수출입물품은 기간 만료 후 즉시 수출국으로 복귀해야함
제3장 제19조	- 전시용품 중 배포용이나 소모성의 물품들은 전시회의 규모, 성질, 참여자의 수 등을 고려해 중국해관이 수입관세를 면세

● A.T.A 까르네 관련 한국기업의 유의해야할 점

구분	유의점
반출국으로 다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A 까르네는 국제보증조직(IBBC)의 가입단체에 의해 발급된 것에 한해 상기 언급된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해외에서 사용한 후, 반출국으로 다시 반입될 물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li> <li>- 정상적인 물품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 이외의 변질 또는 손상이 없이 반출했던 국가로 복귀되어야 함</li> <li>- 농산물, 식료품, 소모품, 위험물품 등 일회용품 또는 물품의 부패 또는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li> </ul>
수출증서 부분	- A.T.A 까르네로 수출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수출증서부분은 관세법 규정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주되며, 재수입 신고시 세관에서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됨
A.T.A. 까르네 보증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A.T.A 까르네 보증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이며, 한번 사용한 증서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 함</li> <li>- A.T.A 까르네를 반납해야만 물품의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임</li> </ul>



## Ⅶ. 중국의 통상환경 최근이슈

### ■ 증치세(增值稅) 제도 개선

- 2018년 5월, 증치세 인하
  - 중국의 증치세는 상품의 각 거래단계(생산, 유통, 소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함
  - 2018년 5월 이후 증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기존 17%, 11%의 세율을 적용해 화물을 수입해온 경우 각각 16%와 10%의 세율로 조정되며, 수출 환급률 또한 각각 1%씩 인하됨
  - 이 외에도 소규모 납세 의무자 기준이 연간 매출 50만 위안(공업기업), 80만 위안(상업기업)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증치세 간이 과세 방식 적용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가 확대됨

기존 세율	변경 후 세율	업종
17%	16%	- 제조업 분야, 물품판매, 물품 수입 - 가공, 수선교체용역 제공
11%	10%	-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 토지사용권, 무형자산 양도 - 기초 통신·우편 서비스 - 양식, 식용식물유 - 수도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 필름
6%	6%	- 서비스업(방송, 통신, 금융, 현대, 생활 서비스)

### ■ 지속 강화되는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 중국 TBT 통보문 현황
  - 중국의 TBT 통보문 발행 건수는 2015년 106건, 2016년 35건, 2017년 60건을 기록하였으며, 중국은 1995년~2017년까지 발행한 TBT 통보문이 총 1,314건으로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에 속함
  - 중국에 대한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2017년 178건 중 47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 2017년 제기된 미통보 STC는 전체 16건 중 5건을 차지함
  - TBT 통보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교통/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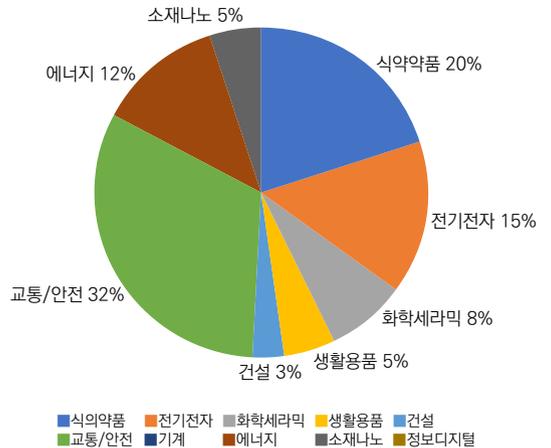
분야가 높은 건수를 보이며, 전기전자, 에너지 분야도 상위를 차지함

\* 특정무역현안(STC): WTO에 공지된 신규 또는 시행중인 기술규제가 교역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원국이 WTO/TBT 위원회에 공식이의를 제기하여 논의하는 것

● 중국의 기술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중국은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사안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전대응이 필요함
- 중국에 대한 미통보 STC 건수 비율로 알 수 있듯이 숨겨진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2017년 분야별 TBT 통보 건수 비율〉



■ 외국 유제품에 대한 검역 강화, 분유 조제법 등록제

● 2018년 1월, 수입된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 필요

- 중국으로 수입되는 조제분유 제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現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조제법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포장 라벨에 등록번호를 명시해야함
- 영유아 분유를 취급하는 한국기업은 조제법 등록 심사조건을 주목해 조제법 등록 및 증문라벨 규정을 파악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
  - ❖ 조제법이 등록 허가되지 않은 분유제품은 품질보증기간 내에 조속히 재고정리가 이뤄져야 함

● 주요 분유 브랜드 조제법 등록현황

-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중국 분유공장 130개의 조제법 952개가 CFDA의 등록 허가를 받음
  - ❖ 해당 공장 130개 중 중국 공장이 93개이며 등록 허가된 조제법이 743개임. 해외공장은 37개, 등록 허가된 조제법은 209개
  - ❖ 외국브랜드 Mead Johnson(美贊臣), Wyeth(惠氏), Danone(达能), FrieslandCampina(菲仕兰)도 조제법 등록 완료
- 해외에 소재한 공장을 대상으로 현재 등록된 조제법 수가 가장 많은 국가 1위는 뉴질랜드)로 등록된 조제법 수는 54개이며 한국은 27개로 3위임

● CFDA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분유 조제법 등록 심사원칙

분유 조제법 등록 3가지 심사 원칙	상표심사원칙
첫째, 조제법상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안됨 둘째, 선택적으로 첨가한 영양소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셋째, 사용 금지 물질, 영유아 분유 조제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 사용 불가	- 허위나 과대 광고를 상용하거나 극단적인 단어 사용 금지 - 질병 예방 관련 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금지 - 치료 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금지 - 건강 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내용 금지 - 식품안전규정 외 기타 기능 포함 금지 또는 변형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금지 조치

● 2018년 12월, 고체폐기물 및 목재폐기물 수입금지 시행

- 중국 생태환경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의 고체폐기물 및 2019년 12월 31일부터 목재폐기물을 포함한 16종의 고체폐기물을 전면 수입금지할 예정임을 발표

◆ 2017년 24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이후 범위가 확대됨

- 2018년 12월부터 수입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은 철강 제련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 페플라스틱, 폐PET병, 폐자동차, 철강·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전기제품, 폐선박 등이 포함됨

2018년 12월 31일, 16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리스트(중국 HS코드 기준)

2618.0010.01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25%이상의 입상 슬래그
2619.0000.10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스케일링
2619.0000.30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철 함유량 80% 이상의 웨이스트, 스크랩
3915.1000.00	폴리 에틸렌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알루미늄 복합 필름
3915.2000.00	스틸렌 중합체의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
3915.3000.00	폴리 염화비닐(PVC) 스크랩
3915.901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크랩(폐 PET 스크랩)
	폐 PET병(압축품)

## 2018년 12월 31일, 16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리스트(중국 HS코드 기준)

3915.9090.00	기타 플라스틱 스크랩
	폐 CD 스크랩
7204.4900.10	폐차 압축물
7204.4900.20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7404.0000.10	구리 회수를 위한 폐전기기계 등 전
7602.0000.10	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선 등
8908.0000.00	폐 선박

## 2019년 12월 31일, 16종 고체폐기물(목재폐기물 포함) 수입금지 리스트(중국 HS코드 기준)

4401.3100.00	목재 펠릿
4401.3900.00	기타 목재의 웨이스트, 스크랩
4501.9010.00	코르크 폐기물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 웨이스트, 스크랩
8101.9700.00	텅스텐 웨이스트, 스크랩
8104.2000.00	마그네슘 웨이스트, 스크랩
8106.0010.92	비스무트웨이스트, 스크랩
8108.3000.00	티타늄웨이스트, 스크랩
8109.3000.00	지르코늄웨이스트, 스크랩
8112.9210.10	게르마늄웨이스트, 스크랩
8112.9220.10	바나듐웨이스트, 스크랩
8112.9240.10	니오븀 웨이스트, 스크랩
8112.9290.11	하프늄 웨이스트, 스크랩
8112.9290.91	갈륨과 레늄 웨이스트, 스크랩
8113.0010.10	입상, 분말상의 텅스텐 카바이드 웨이스트, 스크랩
8113.0090.10	기타 텅스텐 카바이드의 웨이스트, 스크랩

## ■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인하

- 2018년 7월 중국 재정부, 완성차 및 부품 수입관세 인하
  - 중국 개혁개방의 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자동차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소비자 수요 충족 목적
  - 조정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2018년의 한-중국 FTA 협정세율 대비 기준 세율이 낮고, FTA 협정상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품목도 기준관세가

조정 되기 때문에 확인하여 유리하게 선택할 필요

❖ 핵심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이 수입제품 의존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번 관세인하는 부품기업들에 기회 요인

- 완성차 세율은 135개 세번 품목(25% 적용)과 4개 세번 품목(20% 적용)은 15%로 조정하고, 79개 세번 품목(8%, 10%, 15%, 20%, 25% 적용)은 6%로 조정

##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한-중 연결공정 제품” 수출기업 유의점

- 최근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무역법 제301조)조치로, 한-중 간 연결 공정 제품(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생성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에도 원산지판정에 따라 종전에 비해 높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 미국 무역법 제301조: 외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혹은 비합리적인 관행을 갖는 경우 미국은 상대국에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규
- 최근 미국-중국 간 통상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보복 관세 부과 시행, 보복 관세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실정

-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치대상인 품목\*을 한국-중국 간 연결공정으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품목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인 상황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제품의 ‘수출국(country of export)’이 아닌 원산지 국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적용
- 즉, 한-중 연결공정 제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이뤄졌더라도 원산지 판정이 ‘중국산’이라면 보복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 미국의 對중국 보복관세 부과 대상 기준 (1차~3차 보복관세 대상 리스트)

구분	1차	2차	3차
품목 수	818개 (IT·기계 등 : 279개 (84~90류))	279개 (설비·장치 등 : 27~90류)	6,031개 → 5,745개 <sup>6)</sup> (농축산물 및 화학/전자제품)
총금액	340억 달러	160억 달러	2,000억 달러
관세율	25%	25%	10% (2018.9.24~) 25%(2019.1.1~)
발효일	2018.7.6	2018.8.23	2018.9.24, 2019.1.1

〈미국의 對중국 보복관세 부과 대상 기준〉

- 제301조 관세는 중국물품에 적용되며,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임 -  
(The section 301 duties currently only to products of China, and based on the country of origin, not country of export)

- 2018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제3차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현재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행할 것이라 밝힘
- 2019년 12월 1일 정상 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향후 90일 간의 추가 협상을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3차 무역 301조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10% → 25%)을 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양보함
- 미국 관세당국(CBP)의 원산지조사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중 연결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해당 물품의 한국산/중국산 여부에 대한 신중한 원산지판정 및 보복관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통관애로를 사전 방지 필요
  - 한-중 연결공정 제품 생산 기업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이라면 한-미FTA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 및 일반 원산지 규정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산'으로써 입증 및 C/O 발급 진행 필요
  - 한-중 연결공정 제품이 원산지 규정에 의거해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보복 관세 대상 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HS Code의 정확성 검토가 필요. 이때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청 지원 사업 활용 등에 대한 고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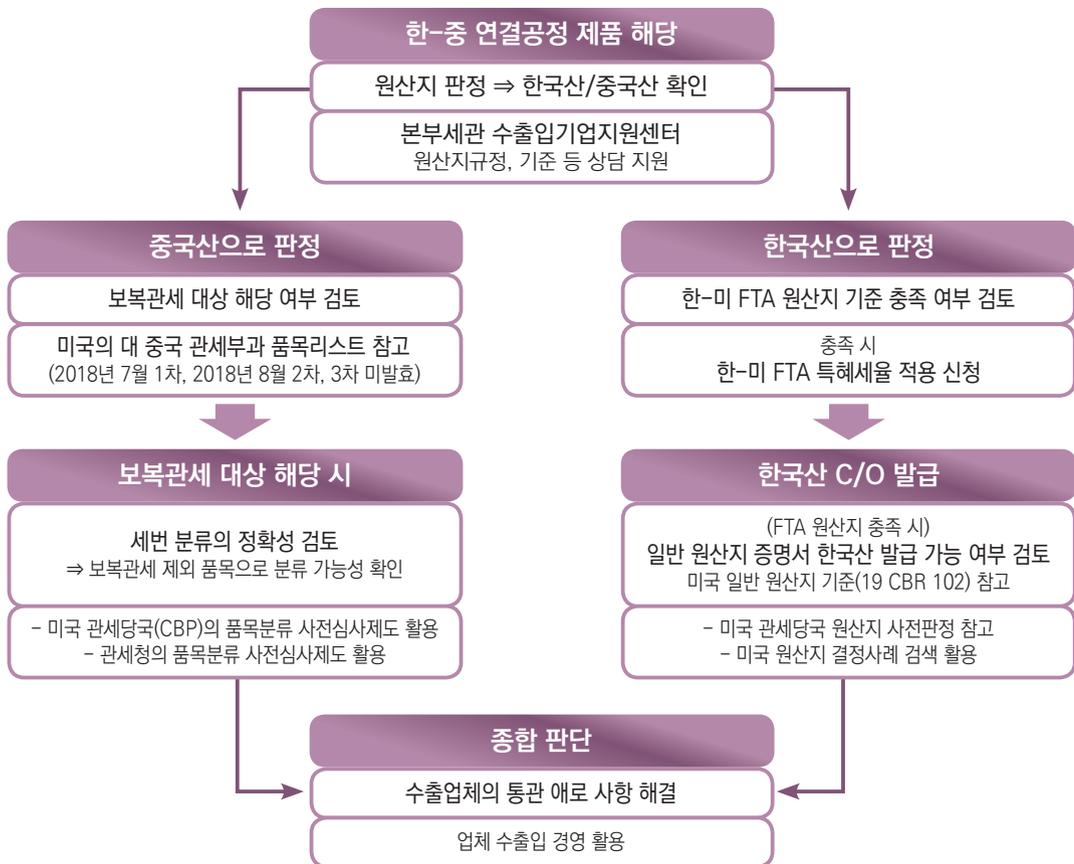
6) 미국 관세율표 8자리 기준의 품목 수이며, 전체 5745개 중 11개 세 번에 대해서는 8자리 세 번 이하 10자리 세 번 중 일부 품목만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83 FR 49153 List 1), 나머지 5723개 품목에 대해서는 8단위 세 번 이하 모든 품목이 부과 대상에 해당됨(83 FR 49153 List 2).

●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책 구성

- 1차 특별 지원책 : 미국 무역법 제301조 통관애로 지원단 구성 및 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관리에 대한 안내 제공
- 2차 특별 지원책 :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 경감, 수출

- 시고 시스템 접속 시 미중 보복관세 부관에 대한 유의사항 자동 팝업 안내, 보복관세 해당 품목 수출업체 선별 및 자율점검에 대한 안내발송
- 수출입 기업이 수출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참여시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가 적극 지원할 예정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관한 원산지 판정 및 대응절차〉



〈미국의 對중국 관세부와 품목리스트(1,2,3차) 및 진행사항 확인 방법미국무역상무부(USTR)홈페이지〉  
 (www.ustr.gov)→“Issue Areas”→“Enforcement”→“Section301 Investigations”

## VIII. 맺음말

전 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현실화되었다. 美-중간의 통상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對중국 의존도가 높고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덧붙여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서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국을 거쳐서 수출하고 있다. 美-중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글로벌공급사슬 구조 자체가 아시아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기업은 더 이상 상생 관계가 아닌 경쟁상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조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원산지판정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발간한 「BIG3 수출국의 新통관환경 및 FTA활용방안 : 중국편」 E-BOOK(2018)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상거래 등 보다 다양한 내용의 확인을 원할 경우 해당 책자를 참고하기를 권장한다.



# FTA TRADE REPORT

